

특허심판의 비약적 발전

특허심판원은 1998. 3. 1일 개원이후 공정하고 신속한 심결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방식과 제도의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온 결과 심판처리기간의 단축, 상급심취소율이 감소 등 양과 질면에서 펄록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가히 세계수준의 심판을 달성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음.

- 특허심판원이 3월 1일로 개원 세돌을 맞는다.
특허심판원은 1995년 9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당시 특허심판소 - 항고심판소 - 대법원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특허쟁송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특허법개정을 통해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1998년 3월 1일 발족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발족 당시에 심판관수를 종전의 26명에서 39명으로 크게 늘려 상표·의장·기계·전기전자 및 화학약품 등 5개 전문분야 13개 상설심판부를 구성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우수한 심판관의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심결문자 성방식을 개선하여 심결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쉽게 명료하게 하였고, 산업재산권 침해 사건과 관련된 심판사건에 대하여는 타사건보다 39.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대외적으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율이 약 24.8%인 것을 고려하면 특허심판원에서 행한 심판의 약 94%가 원심대로 확정되는 것이며 사실상 특허심판원이 산업재산권분야 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있어 제1심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 다만 특허심판원이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분쟁 해결기관이 되기 위하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첨단기술분야별로 전문인력을 고루 갖추는 일과 심판관의 수를 늘려 현재의 과중한 업무량을 해소하는 일이 향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주요지표 비교〉

구 분	권 리	한국(00)	일본(99)	미국(99)	EU(99)
1인당처리건수 (건)	특·실	94	46	105	35
	상·의	169	105	50	47
	평 균	131	75	77	41
심판처리기간 (개월)	특·실	10	16	23	27
	상·의	5	24	30	13
	평 균	7.5	20	26	20
상급심 심결취소율(%)	특·실	23.9	39.2	7	최종심
	상·의	23.7		3	-
	평 균	23.8		5	-

* 주 1. 일본의 심판처리기간은 착수기준임.

2. 미국의 상급심심결취소율이 낮은 것은 우리와 달리 법원에서 명백한 법률적 오류가 없는 한 대부분 특허청의 심결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임.

3. EU의 상급심 취소율이 없는 것은 유럽특허청은 최종심이고 유럽상표청은 '96년 신설되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으나 아직 그 결과가 없음.

-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등 법원 및 검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구두심리·면담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의 내실을 기하는 등 지식재산권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에 왔다.
- 또한 심판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제도를 도입하였고, 심판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예정사건사전공람제를 실시하고, 제도의 실효성보다 오히려 심판의 자연요인으로 작용하는 보정각하불복심판 등 일부심판제도를 폐지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일반인에게 심판정보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심판포대광화일사업을 착수하였고 인터넷시대에 발맞추어 2002년 개통을 목표로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을 추진하는 등 고객감동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간 특허심판원에서는 매년 약 5,000여건을 처리하여 왔으며 2000년 말 현재 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를 보면 평균 131건으로 일본의 평균 75건, 미국의 평균 77건, EU의 평균 41건 비교할 때 월등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평균심판처리기간에 있어서도 종결 처리기준으로 개원이전에는 평균 14개월이었으나 2000년 말에는 평균 7.5개월로 크게 단축되었으며 이는 일본('99, 심판착수기준)의 평균 20개월, 미국('99, 종결처리기준)의 평균 26개월, EU('99, 종결처리기준)의 평균 20개월 등과 비교할 때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신속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심판의 질을 가능할 수 있는 상급심의 심결취소율, 즉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율('2000)은 23.8%로 심판원 발족이전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대법원의 취소율('97) 30.7%나, 일본 동경고등재판소('99)

생체인식기술 특허 출원 “벤처 주도”

생체인식기술 특허 출원이 개인과 벤처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문인식 출원 비중이 지난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www.kipo.go.kr)이 밝힌 생체인식기술 출원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원된 36건의 생체인식 기술 중 20건은 개인, 16건은 벤처기업이 등록해 개인과 벤처기업이 특허 출원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별로는 지문인식 출원 비중이 70~80%에 달한 반면, 홍채인식, 얼굴인식, 음성인식, 정맥인식 등 비지문인식기술 연구는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대기업의 기술투자가 부진한 데다 홍채인식, 정맥인식 같은 비지문인식기술 분야의 원천 특허는 외국 기업이 선점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나타난 결과이라고 밝혔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해외진출 기업 지재권 침해 속출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침해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3년간 국내 기업

의 해외 지재권 침해사례(지난해 14건)는 특허 10건(2건), 실용신안 5건(2건), 의장 9건(3건), 상표 35건(7건) 등 모두 5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특허청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으로 파악한 것으로 침해당한 기업들이 피해사실을 밝히길 꺼려하고 있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등록된 권리의 모조품 유통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된 권리의 모조품 유통 20건, 현지인에 의한 무단 선(先)등록 7건, 영업비밀 침해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침해 사례가 발생한 지역은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가 32건으로 전체 침해 건수의 절반을 넘었으며 유럽과 북미, 호주가 각각 8건,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가 각각 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침해 사례가 빈발하자 지난해 초 ‘해외 지재권보호센터’(080-567-0001)를 설치, 침해사례 신고를 받아 법률 상담과 외교채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피해 업체의 침해분쟁 해결을 돋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는 피해 발생 이후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며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은 먼저 보유한 상표 등 지재권을 현지에서 출원, 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지적재산권 보호·육성지원 법제화

최근 디지털콘텐츠법안을 두고 저작권업계와 온라인업체간 사이에 찬반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동영의원(민주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한 것이다.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과 디지털콘텐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애초 이 법안의 이름은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저작권업계의 반대여론을

수렴해 최근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법’으로 바뀌었다.

이 법안은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기본계획을 명시하고, 국가가 세계·금융 등 행정상 필요한 조처를 취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 각종 세법상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칙규정으로 민사적 구제로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타인이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별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글루타는 디지털 지재권

올해에는 개인 PC를 하나로 연결하는 분산 컴퓨팅 시스템이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또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과 관련된 디지털 지적재산권이 IT(정보기술) 시장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블루투스, “802.11” 등 근거리 무선 통신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IT업계의 바이블로 통하는 IT전문 월간지 “레드 헤링”.이 잡지는 올해 세계 IT시장의 주요 흐름을 이렇게 내다봤다.

레드 헤링은 IT와 직간접으로 연관되는 10가지 트랜드 중 분산 컴퓨팅 확산, 디지털 지적재산권 부각, 벤처캐피털의 지각변동, 근거리 무선 통신장치의 확산, 초광대역 서비스 등장, m(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성장, 인터넷 분야의 법제화 진전 등을 IT와 직접 관련되는 트랜드로 꼽았다.

◆ 분산 컴퓨팅 기법의 확산 = 개인 PC들 간 파일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P2P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미 개인 PC의 하드 디스크에 담겨있는 음악 파일을 송수신하는 서비스가 넥스터사에 의해 상용화 됨으로써 다른 분야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개인 PC들을 인터넷으로 하나로 묶어 종전 수퍼 컴퓨터만이 수행할 수 있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쉬고 있는 PC들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한군데로 모아 이를 수퍼컴퓨터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태풍 등 기상 예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다 정확히 분석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애니메이션 유전공학등의 대형 자료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디지털 재산권 기술의 부상 = P2P 서비스가 확산되면 엔터테인먼트 등 단순한 콘텐츠 제작업체(CP)는 살아남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콘텐츠를 수요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업체들과 합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콘텐츠 유통 과정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는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암호화, 디지털 콘텐츠에 보이지 않는 표시를 하는 워터마킹 등 디지털 재산권 관리 기술이 부각될 전망이다.

◆ 벤처캐피털의 지각변동 = 벤처캐피털은 지난해와 같은 고소득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터넷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상당 부분 거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벤처 투자수익이 연간 20%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자연히 지난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벤처캐피털은 상당수 정리되고 일부 유력 창투사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블루투스 시장의 급성장 = 사무실과 가정의 정보기기들 간에 연결된 케이블을 없앨 무선 통신장치의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블루투스가 대표적이다.

가령 컴퓨터와 프린터에 이 장치를 내장하면 두 기

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없어도 된다.

가정에서도 인터넷TV 게임기 PC에 이 장치를 설치할 경우 케이블 없이 무선 홈네트워킹이 가능해진다.

블루투스가 설치된 정보기기는 내년 3억개가 만들 어지고 오는 2005년엔 14억개가 출하될 전망이다.

블루투스와 경쟁하고 있는 ‘802.11’ 장치도 오는 2005년엔 2천만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초광대역 서비스 등장= 대형 통신 회사들이 통 신망의 데이터 송수신 능력을 크게 키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통신 업체를 통해 다양한 초고 속 통신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된다.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주문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를 비롯해 양방향 인터넷TV 및 방송등이 자유자재로 할수 있게되고 보다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다.

◆ m커머스 확산= 일본에서 본격화 된 무선 인터 넷 “아이모드”를 활용한 무선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성이 높다.

일본 NTT도코모가 서비스하고 있는 아이모드는 이용자가 1천5백만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럽 및 미국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정부의 역할 증대= 인터넷이 사회 기반시설 (인프라)로 정착되면서 관련 법규와 제도가 잇 따라 제정될 것이다.

인터넷이 일부 네티즌들만이 이용하던 단계를 뛰 어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란물에 대한 규제, 세금 부과, 지적재산권, 사생활 침해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 도 정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명의로 北에 첫 상표 출원

부산의 한 장애인단체 간부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북한에 출원해 성서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애인 통일염원대행진 ‘백두에서 한라까지’ 행사 준비위원장을 맡고있는 강충걸(51·부산시 동구 초량동)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소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21통일’ 상표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의 상표가 제3국인 명의를 빌려 북측에 출원 된 적은 있으나 대한민국 주소와 사람 명의를 그대로 사용해 상표 등록을 추진하기는 처음이다.

강 씨는 “21세기에는 7000만 거례의 염원인 남북 통일이 이뤄져야한다는 뜻으로 ‘21통일’ 상표를 북측에 출원하게 됐다”며 “지난달 이미 중국측 대리인에게 관련서류를 발송했으며 2-3일 내에 북한 평양특허청 상표대리부에 접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1통일’과 함께 제출된 한반도 모양의 호랑이 심벌 마크는 대륙이 아닌 태평양을 향해 포효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강 씨는 이 심벌마크에 대해 “더 이상 대륙에 달린 작은 한반도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발판으로 태평양의 넓은 해원(海原)을 향해 힘차게 솟구쳐 세계의 물류 중심이 되며 부강하고 힘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뜻으로 직접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21통일’과 태평양을 향한 호랑이 심벌마크를 신발류와 주류등 10가지 상품에 사용하겠다며 99년 5월 특허청에 정식등록을 마쳤다.

북한주민 접촉신고까지 받아둔 그는 “북측이 이를 받아준다면 민족간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침병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별록 2001/2·3